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유 용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
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
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재단법인 세
종문화회관도 이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□ 이에 개정된 법률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, 재단법인 세
종문화회관의 결산 완료시점을 2개월로 조례를 개정하고자
합니다.(안 제15조제2항)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